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38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허종식·김교흥·김정호

노종면 • 모경종 • 박선원

박성준 · 어기구 · 유동수

윤준병 • 이재관 • 정일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최근 고수익·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(버스회사)을 집중적으로 인수하면서 과잉배당, 차 고지 매각 및 차입매수 등의 행위로 인한 버스사업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.

그런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사업의 양도 ·양수가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고 차고지의 매각 및 개발 행위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승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모펀드의 버스사 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 기됨.

이에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 관청의 관리·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,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 고,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도·증여 및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(안 제5조의4제1항 신설).
- 나. 시·도지사의 양도·양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14조제2항).
- 다.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 시·도지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규모 및 운용경력, 재정상태 등 의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집합기구에 한하여 인가하도록 함(안 제14 조의2제1항 신설).
- 라.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와 경영건전성 유지 확약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(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).
- 마.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이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병하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(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).
- 바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합

병하는 경우 5년간 자산·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(안 제14조의2제5항 신설).

- 사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 는 경우나 금원에 대하여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도록 함(안 제20 조의3제1항 신설).
- 아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 영업 이익에 운송수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 이상으로 배당할 수 없도록 함(안 제20조의3제2항 신설).
- 자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담보, 사채나 주식 매입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 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(안 제20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4(차고지의 매도 등 허가)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매도·증여 및 교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차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.

- 1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- 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
-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제2항 전단 중 "대통령령"을 "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대통령령"으로 한다.

제14조의2,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사모집합투자기구의 양수자격 제한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(이하 "사모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 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경우(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포함한다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하여야 한다.

- 1. 1억 원 이상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 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을 2년 이상 운용한 경력이 있는 국내 금융투자업자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 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자가 될 자격이 있는 국내 투자자로만 구성되어 있을 것
- 2.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수익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
-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
- 4.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한 사모투자집합기구(양수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 집합기구인 경우 포함)가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한 업체수 및 면허대수 기준이 각각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할 것
- 5.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-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사모집합투자 기구(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인을 포함한다)는 차고지 매각 및 배당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사항이 포함된 투자전략 계획서와 경영건전성 유지 확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1.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
- 2. 최대주주 또는 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
- 3. 그 밖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
-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와 관련하여서는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.
- 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인과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자산·부채 및 손익에 대해서는 합병으로인하여 소멸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합병 후 5년간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느 한쪽 회계의 자산으로 다른 한쪽 회계의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.
- 제20조의3(과잉배당 등의 금지) ① 제50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(최대주주가

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원을 배당할 수 없다.

- 1. 직전 회계연도에 순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을 초과한 경우
- 2.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이익잉여금
- 3. 차고지를 매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차고지 매각대금
- 4.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원
- ② 제1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에 운송수지율(요금수입을 운송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)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 이상으로 배당할 수 없다.
- 제20조의4(보증 등의 제한)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자와 최대주주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최대주주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담 보를 제공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
 - 2.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채 또는 새로운 주식이 나 지분을 최대주주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인수하는 행위
 - 3. 그 밖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-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차등지원할 수 있다.
- 제85조제1항에 제15호의2·제15호의3 및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5의2.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전략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
 - 15의3.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
 - 18의2.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배당을 한 경우
 - 18의3.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배당을 한 경우
 - 18의4.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한 경우
- 제9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2의2.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고지를 매 도·증여 및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
- 제9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의2. 제14조의2제3항 각 호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차고지 매각 등 허가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매도·증여 및 교환 등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사업의 양도·양수 인가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·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사모집합투자기구의 양수자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노선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경우(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포함한다)부터 적용한다.
- 제5조(과잉배당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양수 신고를 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(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한다)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- 제6조(보증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양수 신고를 한 노선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자와 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최대주주인 사모집합

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7조(재정지원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<신 설></u> | 제5조의4(차고지의 매도 등 허가) |
| |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|
| | <u>가 차고지의 매도·증여 및 교</u> |
| | 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|
| | 위를 하려면 시·도지사의 허 |
| | <u>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다</u> |
| | 음 각 호의 자에게 차고지를 |
| |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 |
| | <u>하여야 한다.</u> |
| | 1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|
| |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|
| | 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 |
| | <u> 방공사</u> |
| |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|
| |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|
| | <u>령으로 정한다.</u> |
| 제14조(사업의 양도·양수 등) ① | 제14조(사업의 양도・양수 등) ① |
| (생 략) | (현행과 같음) |
| ② <u>대통령령</u> 으로 정하는 여객 |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|
|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・양수 | <u>등 대통령령</u> |
| 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 | |
|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| |
|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| |

•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•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•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③ ~ ⑩ (생 략) <신 설>

③ ~ ⑩ (현행과 같음) 제14조의2(사모집합투자기구의 양수자격 제한 등) ①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」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(이하 "사모 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 는 경우(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의 최대 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 우를 포함한다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 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<u>하여야</u> 한다.

 1. 1억 원 이상의 「자본시장과

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

 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

산을 2년 이상 운용한 경력이 있는 국내 금융투자업자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자가 될 자격이 있는 국내 투자자로만 구성되어 있을 것

- 2.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의 운용 수익으로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인건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
-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
- 4.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한 사모투자집합기구(양수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 집합기구인 경우 포함) 가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한 업체수 및 면허대수 기준이 각각 100분의

- 30 이하에 해당할 것
- 5.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-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사모집합투자기구(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인을 포함한다)는 차고지 매각 및 배당계획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투자전략 계획서와경영건전성 유지 확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 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1.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자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
- 2. 최대주주 또는 지분의 100분

 의 1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
- 3. 그 밖에 노선 여객자동차운

송사업자 법인의 경영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

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와 관련하여서는 제14조제5항및 제6항을 준용한다.

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 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 법인과 그 사모집합투자기 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자 법인이 합병하 는 경우 자산 · 부채 및 손익에 대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 멸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 업자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합병 후 5 년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 여 기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느 한쪽 회계의 자산으로 다 른 한쪽 회계의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.

제20조의3(과잉배당 등의 금지)
① 제50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
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

<u><신</u> 설>

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(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 구인 경우에 한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원을 배당할 수 없다.

- 1. 직전 회계연도에 순손실이발생하였거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한 경우
- 2.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이익잉여금
- 3. 차고지를 매각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차고지 매각대금
- 4.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원
- ② 제1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자는 직전 회계연 도 영업이익에 운송수지율(요 금수입을 운송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)을 적용하여 산 정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 금액 이상으로 배당 할 수 없다.

<u>제20</u>조의4(보증 등의 제한) 제20 조의3제1항에 따른 노선 여객

<신 설>

제23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 선명령 등) ① ~ ③ (생략) <신 설> 자동차운송사업자와 최대주주 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가 최대주주인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 급을 보증하는 행위
- 2.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가 발행하는 사채 또는 새로 운 주식이나 지분을 최대주주 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인수 하는 행위
- 3. 그 밖에 노선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3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제1항에 따 른 개선명령을 받은 운송사업 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면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제85조(면허취소 등) ① 국토교통 부장관, 시 · 도지사(터미널사업 • 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에 한정한다) 또는 시장・군 수 · 구청장(터미널사업에 한정 한다)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 · 제 8호·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 에는 면허,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~ 15. (생략)

<시 석>

<신 설>

| 차등지원할 수 있다.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]85조(면허취소 등) ①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<u>.</u> |
| |
| |
| |
| 1. ~ 15. (현행과 같음) |
| 15의2.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|
| 투자전략에 관한 계획서를 제 |
| 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 |
| 출한 경우 |
| <u>15의3.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</u> |
| 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 |

16. ~ 18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신 설>

19. ~ 41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

제9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• 2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3. ~ 10. (생 략)

제9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| <u>지 아니한 경우</u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6. ~ 18. (현행과 같음) |
| 18의2.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 |
| 하여 배당을 한 경우 |
| <u>1</u> 8의3.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 |
| 하여 배당을 한 경우 |
| <u>18의4.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</u> |
| 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급 |
| 을 보증한 한 경우 |
| 19. ~ 41. (현행과 같음) |
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
| 제90조(벌칙) |
| |
| |
| |
|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|
| 2의2.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 |
| 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 |
| 고지를 매도 • 증여 및 교환하 |
| 는 등의 행위를 한 자 |
| 3. ~ 10. (현행과 같음) |
| 제94조(과태료) ① |
| |
| |
| <u>.</u> |
| 1. (현행과 같음) |
| 1의2. 제14조의2제3항 각 호를 |

| |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<u>자</u> |
| 2. ~ 5. (생 략) | 2. ~ 5. (현행과 같음) |
| ② ~ ⑤ (생 략) |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|